

서울지방세무사회-세무정보(2023-11)

□ 11월의 세무일지

구 분	세 무 일 지
11월 10일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0월분 매출세금계산서 및 계산서 발급기한 원천징수분 법인세·소득세·지방소득세(특별징수분) 신고납부 종업원분 주민세 신고 납부 4대 보험료 납부
11월 15일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고용·산재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
11월 27일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0월 폐업신고 사업자 확정부가가치세 신고 납부기한 10월분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기환급 신고기한 개별소비세 과세유흥장소 신고 납부
11월 30일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종합소득세 중간예납기한 10월분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지급명세서 제출 10월분 거주자의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 제출 2023년 9월 폐업자의 지급명세서 제출기한 근로·자녀장려금 기한 후 신청기한

□ 11월은 개인사업자의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세액 납부기한입니다

(1) 소득세 중간예납 납부대상자

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와 종합과세 되는 비거주자가 소득세 중간예납 납부대상자입니다. 다만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은 중간예납 납부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.

제외대상자	구체적 내용
신규사업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2023.1.1. 현재 사업자가 아닌 자로서 2023년 중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람
휴·폐업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2023.6.30. 이전 휴·폐업자 2023.6.30. 이후 폐업자 중 수시자납 또는 수시부과한 경우

제외대상자	구체적 내용
다음의 소득만이 있는 사람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이자소득, 배당소득, 근로소득, 연금소득 또는 기타소득 • 사업소득 중 속기·타자 등 사무지원 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• 사업소득 중 수시부과하는 소득 • 저술가·화가·배우·가수·영화감독·연출가·촬영사 등 자영 예술가 • 직업선수·코치·심판 등 기타 스포츠서비스업 • 독립된 자격으로 보험가입자의 모집, 증권매매의 권유, 저축의 권장 또는 집금 등을 하고 그 실적에 따라 모집수당·권장수당·집금수당 등을 받는 사람 • (후원)방문판매에 따른 판매수당 등을 받는 사람(2021년 귀속분 사업소득 연말정산을 한 경우에 한함) •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 또는 전환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영위하는 공동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
납세조합 가입자	• 납세조합이 중간예납기간 중(2023.1.1.~6.30.)에 해당 조합원의 소득세를 매월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경우
부동산매매업자	• 중간예납기간 중(2023.1.1.~6.30.)에 매도한 토지 또는 건물에 대하여 토지 등 매매차익예정신고·납부세액이중간예납기준액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
소액부징수자	• 중간예납세액이 50만원 미만인 경우

(2) 중간예납세액의 계산 및 납부방법

중간예납세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되며 중간예납 대상 납세자에게는 관할 세무서에서 납세고지서로 고지됩니다.

$$\text{중간예납세액} = \text{중간예납기준액} \times 1/2 - \left(\begin{array}{l} \text{중간예납기간 중의 토지등} \\ \text{매매차익 예정신고납부세액} \end{array} \right)$$

$$\text{중간예납 기준액} = \left(\begin{array}{l} \text{전년도} \\ \text{중간예} \\ \text{납세액} \end{array} + \begin{array}{l} \text{확정신고} \\ \text{자진납부} \\ \text{세액} \end{array} + \begin{array}{l} \text{결정·경정한} \\ \text{추가납부세액} \\ \text{(가산세포함)} \end{array} + \begin{array}{l} \text{기한후·수정} \\ \text{신고 추가자} \\ \text{진납부세액} \\ \text{(가산세포함)} \end{array} \right) - \text{환급} \\ \text{세액}$$

(3) 중간예납추계액 신고안내

① 중간예납추계액 신고대상자

중간예납세액은 관할세무서에서 고지한 납세고지서에 의하여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나,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간예납세액을 스스로 계산하여 신고 납부할 수 있거나 하여야 한다.

- 2023.1.1.~6.30.까지의 종합소득금액에 대한 소득세액(중간예납추계액)이 중간예납기준액의 30%에 미달하는 경우 → 신고·납부할 수 있음
- 중간예납기준액이 없는 거주자 중 복식부기의무자로 2023년도의 중간예납기간 중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→ 신고·납부하여야 함

② 중간예납추계신고서 제출 및 자진납부기한 : 2023.11.30.

중간예납세액을 스스로 계산하여 신고 납부할 경우에는 반드시 중간예납추계신고서를 2023.11.30.까지 제출하여야 한다.

(4) 근로·자녀장려금, 기한 후 신청

- ① 5월 정기신청 기한에 장려금 신청을 놓친 가구는 11월 30일까지 기한후 신청을 하면 국세청의 심사를 통하여 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.
- ② 기한후 신청기간이 지난 2023.12.1.부터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.
- ③ 2022년 소득에 대해서 신청요건을 충족하면 2023.11.30.까지 기한 후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. 다만, 2022년 소득에 대해 반기(2022년 9월, 2023년 3월), 정기(2023년 5월)에 이미 장려금을 신청한 가구는 기한후 신청대상이 아닙니다.

[감수 : 서울지방세무사회 신 철 연수이사]

서울지방세무사회 회장 임 채 수 올림